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
2005. 3.

 건설교통부

 신분당선주식회사



본 문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1
제2조 (정의)	2
제 2 장 기본약정	13
제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13
제4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	13
제5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14
제6조 (사업시행범위)	15
제7조 (사업이행보증)	15
제8조 (사업기간)	15
제9조 (무상사용기간)	16
제10조 (소유권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부여)	16
제11조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구분)	17
제12조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이익보호)	17
제 3 장 출자자 및 약정투자금 납입	17
제13조 (출자자 및 약정투자금 납입)	17
제14조 (출자자의 변경)	18
제 4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18
제15조 (총사업비)	18
제16조 (총사업비의 변경)	19
제 5 장 실시계획 및 공사	20

제17조	(사업부지의 점유권)	20
제18조	(추가 부지)	21
제19조	(실시계획의 승인)	21
제20조	(인허가)	23
제21조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견신고)	23
제22조	(문화재관련 조사 및 특정 행동)	23
제23조	(품질보증계획)	23
제24조	(환경 및 안전관리)	24
제25조	(실시설계 등)	24
제26조	(건설사업관리)	25
제27조	(보상업무)	25
제28조	(공사기간)	26
제29조	(공사의 착공)	26
제30조	(지체상금)	27
제31조	(공사의 도급)	27
제32조	(기술사항)	28
제33조	(감리의 시행)	28
제34조	(감리자의 선정)	29
제35조	(감리자의 역할 및 책임)	29
제36조	(감리용역대가의 지급 등)	29
제37조	(감리자에 대한 감독 관리)	29
제38조	(공정보고 등)	30
제39조	(실시계획변경)	30
제40조	(위험물의 발견)	31
제41조	(지장물)	31
제42조	(예비준공검사)	31
제43조	(시험, 승낙 및 시운전)	32
제44조	(준공전 사용인가와 부분 준공)	33

제45조 (준공확인)	33
제46조 (관리운영권 등록)	34
제47조 (부대사업의 시행)	34
제 6 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5
제48조 (운영비용)	35
제49조 (유지관리 및 품질확보)	36
제50조 (연락절차 및 유지관리계획과 운영계획의 내용)	37
제51조 (사업시행자의 기타 운영 관련 책임)	38
제52조 (관리 및 운영 등의 관련계약)	39
제53조 (운영실적 보고)	39
제54조 (부속사업의 시행)	40
제55조 (보험가입)	40
제 7 장 수익률 및 운임	40
제56조 (사업수익률)	41
제57조 (운임의 결정 및	41
제58조 (운임의 징수)	42
제59조 (운임정산)	42
제60조 (예상운영수입)	43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	43
제61조 (주무관청의 재정지원)	43
제62조 (건설보조금)	43
제63조 (운임수입보조금 및 운임수입환수금)	44
제64조 (환차손보조금 및 환차익환수금)	46
제65조 (행정적 지원)	46
제66조 (자금차입 등과 관련한 정부의 협조 등)	48

제67조 (민원처리)	49
제68조 (공동사용합의서)	49
제69조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의한 노선 등과의 연계)	50
제 9 장 위험배분 및 의무불이행	50
제70조 (위험배분원칙)	50
제71조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	51
제72조 (정부의 의무불이행 사유)	51
제 10 장 불가항력	52
제73조 (불가항력 사유)	52
제74조 (불가항력의 발생통지 및 이의제기)	53
제75조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	54
제 11 장 협약의 종료 및 해지	55
제76조 (상호 합의에 의한 협약종료)	55
제77조 (사업기간 만료에 의한 협약종료)	55
제78조 (해지)	57
제79조 (중도해지시의 조치 등)	58
제80조 (중도해지에 대한 이의제기)	60
제81조 (해지시 지급금)	60
제82조 (해지시 지급금의 지급 및 조정)	60
제83조 (매수청구권)	62
제 12 장 분쟁의 해결	63
제84조 (분쟁의 해결)	63
제85조 (금액에 대한 분쟁)	63
제86조 (중재)	63

제 13 장	기타사항	64
제87조	(협약의 효력)	64
제88조	(협약의 변경)	64
제89조	(권리의무의 양도)	65
제90조	(대체사업자의 선정)	66
제91조	(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	67
제92조	(재무보고서)	68
제93조	(정부의 협약준수 의무)	68
제94조	(비밀유지)	68
제95조	(통지)	69
제96조	(협약의 수익자)	70
제97조	(완전합의)	70
제98조	(일부무효)	70
제99조	(준거법)	70
제100조	(문서의 우선순위 등)	70
제101조	(언어)	71
제102조	(해석)	71
제103조	(경과조치)	71
부 록		74

대한민국 건설교통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와 신분당선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2005년 3월 18일자로 다음과 같이 실시협약 (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전 문

사업시행자의 출자(예정)자들이 2002년 7월 16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대한민국 법률 제7016호를 말하며, 그 개정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신분당선 전철 건설 및 운영 사업 (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주무관청은 동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2003년 9월 24일 제3자의 제안요청을 공고하는 등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2003년 12월 24일 최초제안자인 (가칭) 신분당선주식회사를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9항에 의하여 본 사업을 위한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다.

본 협약의 당사자들은 본 사업의 목적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개발, 향상시키고 동법에 따라 이를 건설·운영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본 협약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신분당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제3자제안요청공고에 따라 신분당선주식회사를 본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범위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사업명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구간	강남역 ~ 정자역
노선연장	본선 약 18.5 km, 연결선 약 2.3 km
정거장 수	6개소

제2조 (정의)

①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중평균상환환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건설자금용(운영자금 제외) 외 화차입금의 원금 상환연도에 각 외화차입금 상환 당시의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공식환율을 곱하여 합산한 원화액을 당해연도 총 외화상환금액으로 나누어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환율을 말한다.
2. "가중평균차입환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조달하는~~ 건설자금용(운영자금 제외) 외화차입금의 각 외화차입 당시의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공식환율을 곱하여 합산한 원화액을 총 외화차입금액으로 나누어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환율을 말한다.
3. "감리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규정된 감리전문회사(그 포괄 또는 특정승계인을 포함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규정된 감리전문회사(그 포괄 또는 특정승계인을 포함함), 철도안전법 제36조에 규정된 철도차량의 제작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33조(감리의 시행)에서 부여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자를 말하며, 설계감리, 공사책임감리 및 차량제작감리로 구분된다.
4. "건설기간"이라 함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7171호 건설기술관리법을 말한다.
6. "건설보조금"이라 함은 제62조(건설보조금)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 사업을 위한 총사업비에 대한 분담액으로서 주무관청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조

금을 말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938호 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한다.
8. "공동사용합의서"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와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부록16(공동사용합의서)에 기재된 특정공유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합의, 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말한다.
9.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10. "공사도급계약"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후 공사기간 중에 사업시행자와 수급인들 간에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11. "공사착공일"이라 함은 제29조(공사의 착공)에 따라 제출된 착공계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12. "공식환율"이라 함은 당해 일자에 서울외국환중개회사가 최종 고시하는 해당 외국통화에 대한 시장평균환율을 말한다. 만약 그러한 환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로 대체하기로 한다.
13. "공정거래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70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말한다.
14. "관계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제반 법령 및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15. "관리운영계약"이라 함은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자 간에 체결되는 본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16.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유지, 관리, 운영, 사용하며, 운영기간 동안 운임을 부과하고 이용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 확인 후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정받는 본 사업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리운영권을 말한다.
17. "관리운영자"라 함은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및 양수인을 포함한다.

18. "교통영향평가"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행한 교통영향평가를 말한다.
19. "궤도"라 함은 차량을 직접 지지하고 안내하는 설비로서, 레일, 침목 및 기타 부속품으로 구성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0. "국가계약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836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말한다.
21. "금융계약"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총 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각종 금융계약을 말한다.
22. "금융완결"이라 함은 금융계약이 서명되고 동 계약 상 최초 차입금 인출(사업시행자의 채권발행을 포함)의 제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 또는 면제되어 차입금이 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23. "기준이자율"이라 함은 그 산정 시점의 직전 1개월 동안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신용등급 AA-인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 유통수익률의 산술 평균을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만약, 신용등급이 AA-인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차하위등급의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로 대체한다. 만약,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제84조(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4. "기타 경미한 사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 지정 후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단서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업으로서 부록6(부속사업수입)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말하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구내매점 운영, 자동판매기설치 등 편의시설 사업과 철도시설을 이용한 기타 광고사업, 기타 철도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통신관련 시설물 설치에 따른 사용료 부과 포함) 등을 포함한다.
25. "담보권"이라 함은 저당권, 유치권, 질권, 기타 담보권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적·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6. "대리은행"이라 함은 대주단이 대리은행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

- 용계약에 따른 차입금의 인출 및 상환, 금융계약의 사후관리 기타 금융계약의 당사자간 연락업무 등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27. "대주단"이라 함은 금융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을 위한 금융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8. "무상사용기간"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본 사업과 관련된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을 말한다.
29. "문화재"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정의되는 고고학적, 예술적,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화석, 고대유물이나 구조물 및 기타 잔재로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을 말한다.
30. "민간투자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7016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을 말한다.
31. "민간투자법령"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을 말한다.
3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기획예산처에서 2003년도 고시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한다.
33. "법령"이라 함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등  규범을 말한다.
34. "보건 및 안전 규정"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보건, 안전에 관한 법률, 규칙, 규정, 기준 등을 말한다.
35. "보조금"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53조의 규정 및 본 협약에 따라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의 보조금을 말하며, 이는 제62조(건설보조금)에 의한 건설보조금, 제63조(운임수입보조금 및 운임수입환수금)에 의한 운임수입보조금, 제64조(환차손보조금 및 환차익환수금)에 의한 환차손보조금을 포함한다.
36. "본 사업"이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신분당선 전철의 설계, 공사, 관리, 유지 및 준공 후 정상적 운영과 이용자에 대한 운임 부과, 징수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유지, 관리하는 시설 내에서의 부대사업 및 부속사업(제54조(부속사업의 시행) 제3항에 의한 기타 경미한 사업을 포함함) 시행을 포함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7. "본 사업시설"이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하여야 하는

신분당선 전철의 시설물을 말한다.



38. "본 협약"이라 함은 이 실시협약을 의미한다.
39. "부대사업"이라 함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투자비 보전 또는 본 사업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40. "부분준공"이라 함은 준공일 이전에 본 사업시설의 일부분을 완공하여 차량운행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1. "부속사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 지정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업으로서 부록6(부속사업수입)의 산정에 포함된 역사내 부속상가 임대, 차량 및 역 구내 광고 등을 말한다.
42. "분기"라 함은 당해연도의 1월 1일로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로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로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3. "분쟁"이라 함은 제84조(분쟁의 해결)에서 부여된 바의 의미를 갖는다.
44. "불가항력 사유"라 함은 제73조(불가항력 사유)에서 부여된 바의 의미를 갖는다.
45. "사업관리"라 함은 제40조(건설사업관리) 제1항에서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46. "사업기간"이라 함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운영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운영기간으로 구분된다.
47. "사업부지"라 함은 본 협약 제17조 제1항에서 정의된 것을 의미한다.
48. "사업수익률"이라 함은 본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로서 제56조(사업수익률)에서 정한 실질 사업수익률을 의미한다.
49. "사업시행권"이라 함은 제4조(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본 사업시행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50. "사업시행자"라 함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규정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51. "사업년도"라 함은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년도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종료 년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

- 까지로 한다.
52. "사업제안서"라 함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하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53.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847호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한다.
 54. "성능시험"이라 함은 본 협약 제43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의 기능 및 성능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의미한다.
 55. "소비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당해 기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들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한다.
 56. "소비자물가변동률"이라 함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당해 기간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이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들간에 합의하는 다른 변동율로 대체한다.
 57.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분"이라 함은 2002년 5월 1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당해 기간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 분을 말하며, 본 협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장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적용한다.
 68.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계약상대방으로서 동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할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및 양수인을 포함한다.
 59. "시설물안전관리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941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을 말한다.
 60. "시운전"이라 함은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26호) 및 도시철도운전규칙 제9조(신설구간등의 시운전)에 따라 본선 신설구간에서 정상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시험 및 확인사항을 말한다.
 61. "신분당선 연장사업"이라 함은 본 사업과 별개로 정부가 추진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준공예정인 정자역(본 사업에 의한 정자역을 말함)부터 화서역 및 강남역(본 사업에 의한 강남역을 말함)부터 용산역까지의 철도

- 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말한다.
62. "실시계획"이라 함은 협상시 합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민간 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에 대한 실시계획을 말한다.
 63. "실시계획변경"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후 제39조(실시계획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본 사업시설의 실시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64. "실시계획변경명령"이라 함은 제39조(실시계획변경) 제5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하는 실시계획변경명령을 말한다.
 65.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사업시행자가 완료한 토목, 건축, 전기, 기계설비, 신호, 통신, 궤도 등의 설계로서 실제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66. "약정투자금"이라 함은 제13조(출자자 및 약정투자금 납입)에 따라 출자자들에 의하여 본 사업에 납입되는 금액을 말한다.
 67.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701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에너지사용계획을 말한다.
 68. "영업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69. "예비비"라 함은 부록1(총사업비)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70. "예비준공검사"라 함은 제42조(예비준공검사)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검사절차를 말한다.
 71. "예상운영수입"이라 함은 부록4(예상운영수입)에 명시된 본 사업의 운영기간 중 특정운영연도의 예상운영수입을 말한다.
 72. "예상운임수입"이라 함은 부록4(예상운영수입)에 명시된 본 사업의 운영기간 중 특정 운영연도의 예상운임수입을 말한다. 단, 제63조(운임수입보조금 및 운임수입환수금)에서의 예상운임수입은 부록4(예상운영수입)의 불변예상운임수입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당해연도 예상운임수입을 의미한다.
 73. "완공일"이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본 작업이 완료되어 준공요건에 부합되는 요건을 충족하여 준공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을 말한다.

74. "외화"라 함은 해당시점의 원화를 제외한 대한민국 법령이 인정하는 모든 적법한 통화를 말한다.
75. "운영개시예정일"이라 함은 실시계획에서 운영개시일로 예정된 날을 의미하며 본 협약의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76. "운영개시일"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이 등록된 날로 한다.
77. "운영계획"이라 함은 제50조(연락절차 및 유지관리계획과 운영계획의 내용)에 따라 작성된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78. "운영기간"이라 함은 운영개시일부터 무상사용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9. "운영설비"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한 차량 등 제반설비를 말한다.
80. "운영수입"이라 함은 사업기간 동안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수입으로서, 운임수입 및 부속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총칭하여 말한다.
81. "운영연도"라 함은 운영기간 중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운영개시일이 속하는 년도는 운영개시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사업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82. "운임수입보조금"이라 함은 제63조(운임수입보조금 및 운임수입환수금)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83. "운임수입환수금"이라 함은 제63조(운임수입보조금 및 운임수입환수금)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환수하는 금원을 말한다.
84. "운임"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이용의 대가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85. "운임수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이용의 대가로 부과하는 운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86. "원화"라 함은 해당 시점의 대한민국의 적법한 통화를 말한다.
87. "월(月)"이라 함은 해당 월의 1일로부터 28일 또는 1일로부터 29일 또는 1일로부터 30일 또는 1일로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88. "위험물"이라 함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와 같이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폭발물, 소음, 오염물질, 폐기물, 기타 독성, 유해성, 가연성, 부식성을 가지

- 는 물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재산 또는 사람, 기타 환경에 의하여 관리되는 유기체에 단독으로 또는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위해, 손해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89. "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시간적, 통상적 마모에 의한 손상은 제외함)을 원상 복구하는 등 시설물의 보수, 보강에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90. "유지관리계획"이라 함은 제50조(연락절차 및 유지관리계획과 운영계획의 내용)에 따라 작성된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91. "인허가"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부, 관계기관 또는 기타 제반공급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행하는 허가, 동의, 인가, 승인, 승낙 등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92. "일(日) 또는 날"이라 함은 0시에 시작하는 24시간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93. "자(者)"라 함은 개인, 회사, 합작자, 법인, 공동투자회사, 조합, 신탁, 비법인 단체 또는 정부의 기관을 말한다.
94. "재무모델"이라 함은 부록12(재무모델)에 제시된 **본 사업**에 대한 재무구조의 구성에 관한 **정량적 모형** 모델을 말한다.
95. "전기공사업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7171호 전기공사업법을 말한다.
96. "전기통신기본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7210호 전기통신기본법을 말한다.
97. "전력기술관리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673호 전력기술관리법을 말한다.
98. "전력유도의 방지대책"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정보통신부령 제116호) 제9조 및 전력유도의구체적산출방법에대한기술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3-5호)에 따라 전기공작물 또는 전철시설 등이 그 주위에 있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 등에 의한 전압이 발생하여 전기통신설비에 장애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를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한 모든 제반조치를 말한다.
99. "전파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909호 전파법을 말한다.

100. "정보통신공사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7140호 정보통신공사법을 말한다.
101. "정부"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102. "제3자제안요청공고"라 함은 대한민국 건설교통부가 2003년 9월 24일 공고한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제3자제안요청 공고를 말한다.
103. "제세공과금"이라 함은 본 사업의 시행, 준공, 등기, 소유권 이전, 관리운영 등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공과금, 부과금과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과, 징수, 사정되는 각종 부담금, 수수료 등을 말한다.
104. "조기준공"이라 함은 본 사업에 관한 운영개시예정일 이전에 그 관리운영권이 등록되어 그에 따른 차량운행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5. "주무관청"이라 함은 그 문맥에 따라 건설교통부 혹은 민간투자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본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 장관을 말하며, 주무관청이 본 협약에 따른 업무 또는 권한을 다른 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수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으로 본다. 
106. "주요공사일정표"라 함은 부록13(주요공사일정표)의 주요공사일정표를 말한다. 
107. "준공예정일"이라 함은 공사착공일로부터 공사기간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본 협약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동 연장된 기간만큼을 추가하기로 한다.
108. "준공일"이라 함은 제45조(준공확인)에 기재된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하여 준공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준공확인필증의 일자를 말한다.
109. "준공확인필증"이라 함은 제45조(준공확인)에 따라 주무관청이 발행하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110. "지장물"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 등의 시행을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유형의 구조물을 말한다.
111. "지적재산"이라 함은 본 사업 또는 작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으로서 등

- 록여부를 불문하고 특허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저작권, 의장권, 영업상 비밀권 및 이와 동일 혹은 유사한 권리를 말한다.
112. "차량"이라 함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하여 제작되어 궤도상을 운전하는 설비를 말한다.
113. "차량성능검사증"이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성능시험을 통하여 차량 및 열차운행 시스템이 안전하여 열차의 정상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검사증을 말한다.
114. "철도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5903호 철도법을 말한다.
115. "초과환차손(익)"이라 함은 가중평균상환환율과 가중평균차입환율간의 환율 차이가 20%를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환차손(익)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환차손(익)에서 그 환율 차이가 20%이었을 경우에 발생하였을 환차손(익)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116. "총민간사업비"라 함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 중에서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비용(건설보조금과 보상비를 포함함)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부록1(총사업비)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117. "총민간투자비"라 함은 총민간사업비, 예비비, 건설이자의 합계금을 의미한다.
118. "총사업비"라 함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 부록1(총사업비)에 명기된 것을 말한다.
119. "최초운임"이라 함은 부록5(운임수준 및 조정)에 의하여 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운임을 의미한다.
120. "추가물"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 후 본 사업시설에 추가하여 시설한 일체의 시설 및 장치를 말한다.
121. "출자자"라 함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자본금을 납입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제14조(출자자의 변경)에 따라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122. "출자에정자"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단계에서 법

- 인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123. "협약당사자(들)"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사업시행자 또는 문맥에 따라 어느 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124.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행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125. "환차손"이라 함은 해당년도의 해당 외화의 원리금상환과 관련하여 동연도에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한 순외환차손으로서, 그 년도의 해당 외화에 대한 가중평균상환환율과 해당 외화에 대한 가중평균차입환율간의 차이에 그 년도에 해당 외화로 상환된 총 원리금상환액을 곱하여 결정한 액수로 한다.
126. "환차손보조금"이라 함은 제64조(환차손보조금 및 환차익환수금)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불하는 환차손보조금을 의미한다.
127. "환차익"이라 함은 해당년도의 해당 외화의 원리금상환과 관련하여 동연도에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한 순외환차익으로서, 그 년도의 해당 외화에 대한 가중평균상환환율과 해당 외화에 대한 가중평균차입환율간의 차이에 그 년도에 해당 외화로 상환된 총 원리금상환액을 곱하여 결정한 액수로 한다.
128. "환차익환수금"이라 함은 제64조(환차손보조금 및 환차익환수금)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지불하는 환차익환수금을 의미한다.

제 2 장 기본약정

제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자제안요청공고 및 본 협약에 따라 신분당선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제4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자제안요청공고 및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설계 및 건설하는 권한
2. 민간투자법 제19조에 따라 제1호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본 사업시설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후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권한 (단,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 또는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3. 제1호에 따라 건설된 본 사업시설을 무상사용기간 동안 민간투자법에 따라 무상 사용하고, 시설 이용자로부터 합리적인 운임을 부과, 징수하며 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할 수 있는 권한
4.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권한
5. 제54조(부속사업의 시행)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이용한 부속사업(제54조 제3항에 의한 기타 경미한 사업을 포함함)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
6. 제47조(부대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
7.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관계기관과 협의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본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시설물의 건설 및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권한
8. 본 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건설 및 운영관리위수탁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을 포함하여 기타 본 사업의 수행 및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본 협약 및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은 사업기간동안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취소, 철회, 제한, 박탈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리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자금조달, 공사, 관리 및 운영, 운임의 부과 및 징수, 기타 본 협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 ③ 출자예정자는 민간투자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 본 사업을 수행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동 법인이 본 협약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시행범위)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이행보증)

- ①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사업비(사업이행보증보험료 제외)의 10%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금(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서를 주무관청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15일 한도 내에서 사업이행보증금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본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을 정부에 귀속시키거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준공일 이전에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또는 공사가 완공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이행보증금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기간)

- ① 사업기간은 본 협약에 따라 달리 개정, 수정 또는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운영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 ② 운영기간은 본 협약에 따라 달리 변경되지 않는 한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기간이 경과한 날(단, 조기준공 시는 실시계획 상의 운영개시예정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날) 또는 본 협약에 따라 해지되는 날 중 선평래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9조 (무상사용기간)

- ①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무상사용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단, 조기준공 시는 실시계획 상의 운영개시예정일로부터 30년간)으로 하되,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 ② 본 사업시설의 부분준공으로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가능할 경우, 주무관청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부분준공된 시설의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부분준공일로부터 시설 이용자에게 운임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운임수준, 무상사용기간, 관련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조기 준공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즉시 본 사업시설의 준공절차를 이행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운영을 허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기준공일로부터 시설 이용자에게 제57조(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따라 산정된 운임을 징수하기로 한다. 본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무상사용기간은 운영개시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0조 (소유권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부여)

민간투자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제11조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민간투자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 1. 부실시공 방지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본 협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할 경우 민간투자법 제46조 및 제47조의 해당 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간접자본시설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주무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이익보호)

- ①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책임과 의무는 원칙적으로 변동되지 않는다.
- ② 본 협약 체결일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되는 법령 등의 제정, 개정, 폐지, 수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당내용을 본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제 3 장 출자자 및 약정투자금 납입

제13조 (출자자 및 약정투자금 납입)

- ① 사업시행자인 신분당선주식회사의 최초 출자(예정)자 구성 및 그 지분율은 부록8(최초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과 같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그 출자자들로 하여금 부록2(약정투자금 납입일정)에 따른 약정투자금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어느 출자자가 부록2(약정출자금 납입일정)에 따라 결정된 자신의 출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대체하는 출자자를 선정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자자의 변경)

- ① 사업시행자는 지분율 5% 이상의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또는 그 출자자의 지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은 사전 승인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지는 출자자 또는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대역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의한 출자자변경 또는 출자지분 변경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나,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주무관청에게 7일 이내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15조 (총사업비)

총사업비는 부록1(총사업비)과 같이 2002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11,690억원이며 총사업비에서 제62조(건설보조금)에 의한 건설보조금 금 5,611억 원을 제외한 부록1(총사업비)의 금 6,079억원을 총민간사업비로 한다.

제16조 (총사업비의 변경)

- ① 본 협약으로 확정된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타 본 협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관계기관의 요구를 주무관청이 수용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2. 민간투자법, 조세관련법령 등(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을 포함)의 제·개정 등(부가가치세에 관한 유권해석 포함)의 사유가 발생하고 이를 주무관청이 수용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민원(제6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민원은 제외함)으로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4. 정부정책의 변경, 본 사업과 관련한 주무관청의 추가 요구,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하는 경우
 5. 본 협약 부록1(총사업비)에 기재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총사업비의 증감이 있는 경우
 6. 공사기간 중 불가항력사유를 면제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에 의하여 총사업비가 증감하는 경우
 7.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위한 입찰 또는 공사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감리비가 증감되는 경우
- ② 본 협약 체결시 확정된 총사업비 중 공사 비용의 변동과 연계되지 않는 기타 비용의 사후 조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총사업비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은 부록3(건설보조금 지급일정)에 명시된 건설보조금을 조정하거나, 이와 병행하여 운임, 무상사용기간 조정 가능성을 협의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총사업비의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증빙자료 및 산출근거를 첨부한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감리자 기타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 서류를 접수 후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보완·수정 요구시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본조에 따라 총사업비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실시계획 승인시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고, 단가작성기준일은 2002년 5월 1일로 하며, 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한다.

제 5 장 실시계획 및 공사

제17조 (사업부지의 점유권)

- ① 본 협약의 목적상 “사업부지”라 함은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토지, 공간, 수로, 지표, 지상 및 지하를 말한다.
 - 1. 승인된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도면상의 본 시설물이 위치할 지역
 - 2. 승인된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도면상의 임시점유지 필요한 지역
 - 3. 본 사업을 위하여 제18조(추가부지) 제2항에 의해 취득하는 추가부지
- ② 주무관청은 사업기간동안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부록 13(주요공사일정표)의 공정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본 사업부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 사업부지 출입, 무상사용 및 기타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사업부지와 관련된 지장물은 제40조(위험물의 발견)에 따라 처리하며, 주무관청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또는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부지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
- ④ 주무관청은 전체 사업기간 동안 사업부지를 소유하며, 사업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양도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⑤ 본 협약의 종료 또는 본 협약의 해지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제1항에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한 사업부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 사업부지 출입, 무상사용 및 기타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리는 소멸된다.
- ⑥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의 승인이 없는 한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 ⑦ 주무관청이 본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73조의 위협부담에 따라 처리하고, 그로 인하여 연장되는 공사기간은 제28조(공사기간)에 정한 해당 절차에 따라 이를 연장한다.

제18조 (추가 부지)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노선변경 기타 사유로 실시계획, 이용계획 등 사업계획 변경을 수반하여 도시계획변경에 필요한 추가 소요부지가 필요할 경우, 이에 관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협의 결과 추가부지가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추가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해당 추가부지에 대하여는 제17조(사업부지의 점유권)를 적용한다.

제19조 (실시계획의 승인)

-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차량과 관련하여 본 협약 부록15(기술사항)에서 요구되는 기술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차량제작 및 공급을 총괄할 주관사를 선정하여 주무관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

자는 차량제작 및 공급을 총괄하는 주관사를 선정할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의 설계·제작·공급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자료 및 관련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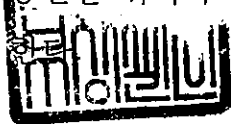
- ③ 실시계획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에 실시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안이 본 협약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제4항의 실시계획 승인여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또는 승인여부 통보기한 만료일 3주일전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러한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자료나 정보의 제공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4항의 승인 또는 통보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⑥ 주무관청이 제4항에 따른 보완 및 자료 또는 정보의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요구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서 주무관청이 달리 지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자료 또는 정보 또는 해당 보완사항을 시정한 실시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주무관청이 조건없는 승인이나, 조건부 승인 또는 이유를 명시한 승인거절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에 대하여 승인이나 조건부 승인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29조(공사의 착공) 제2항에 따라 본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⑧ 본 사업시설의 정거장 명칭은 사업시행자가 현행 전철운영기관의 역명제정 절차를 준용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 (인허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부처, 기타 관계기관 및 제반공급 시설의 관리자에게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러한 각 신청에 대하여 주무 관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견신고)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문화재청의 지표조사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지표조사후 지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동 협의 결과 시굴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굴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의거 주무관청 및 문화재청에 문화재 발견 사실을 즉시 신고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재를 해할 수 있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문화재가 발견된 동일한 위치와 조건대로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문화재관련 조사 및 특정 행동)

- ① 사업시행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 발견시 이에 대한 후속 제반조치는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사업시행자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의 시굴, 발굴 등 그 후속 조치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공사지연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제75조(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따른다.

제23조 (품질보증계획)

-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 활동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이행되고 본 협약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와 절차를 규정하게 될 품질보증 및 관리계획(KSA:ISO9001, 14001 규격 등을 말하며, 이하 “품질보증계획”이라

함)과 품질보증지침을 본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수립하고, 본 사업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품질보증계획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품질보증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작업함에 있어서 품질보증계획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환경 및 안전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실시계획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또한, 본 사업의 완공 후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부지복구계획에 따라 관련부지를 조성하거나 처리한다. 다만, 부지복구계획은 환경보호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법 등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책임감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포함함)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실시설계 등)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도서 작성에 적용할 설계기준은 관계법령, 철도설계기준, 협상 합의내용에 따른다.
- ③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전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건

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지적 또는 보완 또는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본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하한 하자 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닌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26조 (건설사업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감리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이하 "사업관리"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업관리조직을 구성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업관리조직은 위 제3자로 하여금 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그에 합당한 사업관리자로서의 의무 및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계약의 변경내용을 포함함)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한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사항,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제27조 (보상업무)

- ①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실시계획으로 승인된 본 사업시설에 속하는 부지, 지장물, 기타 손실보상업무는 주무관청이 이를 처리, 부담한다. 또한,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개발훼손부담금은 주무관청이 이를 처리, 부담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사업부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의 필요에 의한

부지, 지장물, 개발훼손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의한 보상업무는 본 사업의 공사 착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무관청은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의 보상업무가 지연되어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이를 해소하기로 한다. 단, 사업시행자는 보상업무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8조 (공사기간)

-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60개월로 한다. 다만, 본 협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6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의 사유에 의거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협의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동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에 상응한 제1항의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 ③ 불가항력 및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게 기간연장 사유의 내역 및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상의 관련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상추가기간을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은 위 통지의 수령후 15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9조 (공사의 착공)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일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통보 후 30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착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이외의 이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지장을 받는 경우 상기 예정된 착공일을 그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제30조 (지체상금)

- 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한 준공 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위 준공예정일 다음 날로부터 실제 준공일(준공필증 교부일)까지의 지체일수에 대하여 총사업비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1일당 0.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주무관청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총액은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 총액이 총사업비의 10%에 이르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민간투자법 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1조 (공사의 도급)

-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공사(수급인)로 선정하여야 하며, 착공일 30일 전까지 시공사(수급인)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자들을 수급인으로 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수급인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수급인이 본 사업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이하"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감리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본 사업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시공과정에서 체불노임 등이 발생할 경우 하수급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불

노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⑦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수급인 또는 그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 상의 자신의 의무사항,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 ⑧ 주무관청은 설계자, 수급인 또는 그 하도급자에 대한 업체선정, 도급계약,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32조 (기술사항)

- ① 본 사업과 본 사업시설에 대한 기술사항은 부록15(기술사항)에 의한다.
- ② 사업기간 중 운용상의 효율성 및 기술발전에 따른 시스템 대체기술, 신규기술이 개발되어 기존 합의된 설계기준보다 동등 이상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비 증감 없이 이를 변경 적용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후 시설자재 등 소요물품의 품질, 단종 등 기타 유사한 사유로 실시계획상의 자재 또는 물품을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사업비 증감 없이 이를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제33조 (감리의 시행)

- ① 사업시행자는 설계감리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검토를 하여 본 협약의 조건에 따라 실시설계를 감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책임감리자로 하여금 본 작업이 실시계획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본 작업을 감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차량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차량제작감리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차량의 제작감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감리자의 선정)

- ① 설계감리자의 선정은 사업시행자가 하되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공사책임감리 및 차량제작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5조 (감리자의 역할 및 책임)

- ① 설계감리자, 공사책임감리자 및 차량제작감리자의 역할 및 책임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 ② 사업시행자는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설계감리자, 공사책임감리자, 차량제작감리자에 관한 본 협약상의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감리용역대가의 지급 등)

- ① 사업시행자는 감리자로부터 감리대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주무관청의 확인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감리자는 그 관리감독권자에 의한 기성 확인 후 감리대가의 지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아 이를 30일 이내에 지급한 후 그 지급내역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대가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해당 감리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37조 (감리자에 대한 감독 관리)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감리자들의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본 협약 제34조(감리자의 선정)에 의하여 선정된 감리자들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또는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제38조 (공정보고 등)

- ① 사업시행자는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매월 말일 및 매분기말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책임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월별 및 분기별 공정보고서(분기말이 포함된 월은 분기보고로 대체할 수 있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공정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당해 기간에 수행한 실공정 및 차기계획 (실제 및 계획 공정 간의 비교를 포함함)
 - 2. 당해 기간에 사용된 주요 장비실적 및 차기 계획
 - 3. 공종별 실 투입인원 및 차기계획
 - 4. 기자재 조달현황
 - 5. 공종 및 공정별 공사현황사진
 - 6. 사고, 사건, 환경 관련 활동자료 및 안전관리 통계자료
 - 7. 기타 공정보고 관련 필요사항
-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추진일부별(분기)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누계공정이 실시계획에 정한 공정계획에 대비하여 95% 미만인 경우 부진한 공정을 만회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정상적인 공정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 월별 공정계획 및 잔여공사에 대한 분기별 공정계획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실시계획변경)

- ① 주무관청이 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위 통지를 수령한 45일 이내에(외부기관에 의한 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그 용역수행 기간은 위 기간 산정에서 이를 제외함), 정부에게 실시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위험물의 발견)

- ① 공사기간 중 본 협약 체결당시 사업시행자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수급인은 이를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하고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 및 수급인은 위험물의 제거 및 중화 등과 관련된 인허가조건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 또는 관계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위험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보험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 위험을 부보하여야 하며, 그 외에 제1항에 의한 위험물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기간연장에 관하여는 제75조(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제41조 (지장물)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본 사업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장물을 조사 확인하고(하여) 이에 대한 이설여부 및 공사반대요청을 판단하여 관련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기간 중 관계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지상 및 지하 시설물의 교체 또는 이설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이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 (예비준공검사)

-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법규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라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전에 공사책임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본 사업시설이 준공예정일까지 준공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예비준공검사는 완공에 필요한 인허가를 모두 취득하기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예비준공검사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예비준공검사 기간 중에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④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성능시험을 시행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예비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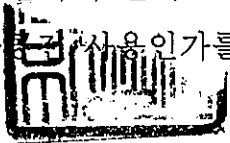
제43조 (시험, 승낙 및 시운전)

- ① 사업시행자는 도시철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본조에 따른 차량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부록13(주요공사일정표)에 명시된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 12개월 전까지 부록15(기술사항)과 도시철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성능시험 및 시운전 절차서(이하 본조에서 "시험운전관리절차서"라 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험운전관리절차서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험운전관리절차서의 내용은 본 사업시설의 관련 부분이 기술사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수행할 시험 및 시운전의 개요, 방법, 절차 등을 포함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도시철도법 등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차량 및 시스템에 대한 성능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그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능시험, 시운전의 기간 및 절차(이하 본조에서 "승인된 시험절차"라 한다)를 승인하여야 한다. 그 절차는 성능시험 및 시운전의 일부로서 수행될 시험과 검사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성능시험 및 시운전은 승인된 시험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성능시험의 적정성에 대하여 주무관청 및 차량제작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성능시험에 필요한 인허가는 성능시험 예정일 이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발급되어야 한다.
- ⑥ 성능시험 결과가 승인된 시험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성능시험 완료 후 14일 이내에 차량성능검사증을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⑦ 운영개시를 위한 시운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선 신설구간에서 시스템 설치 상태 또는 운전체계의 점검과 종사자의 업무 숙달을 위하여 정상운전을 하기 전에 60일 이상 시행 하여야 한다.

제44조 (준공전 사용인가와 부분 준공)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전체의 준공 전이라도 주무관청으로부터 부분 준공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 확인(이하 본조에서 "부분준공확인"이라 한다)을 받아 이를 무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간 및 무상사용기간은 전체준공일로부터 30년간으로 한다. 기타 부분준공여부 및 관리, 운영의 방법, 운영수입의 귀속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부분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45조(준공확인)의 준공확인 절차에 준하여 주무관청에 부분준공에 대한 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준공전 사용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준공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시행한 후 **민간투자법 제2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인가를 할 수 있다.



제45조 (준공확인)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시 정한 기간(본 협약에 의하여 동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내에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여 주무관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43조(시험, 승낙 및 시운전)의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민간투자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이하 본조에서 "준공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준공보고서에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서류, 본 작업이 부록15(기술사항)에 정한 요건에 따라 완료되었다는 보고서, 성능시험결과와 보고서의 사본 및 최종 안전인증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확인 신청을 접수받은 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본 작업이 부록15(기술사항)에 기재된 요건에 맞게 수행되었는지에 관한 준공보고서의 승인 여부(준공확인필증을 포함함)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설이 실시계획에 의한 준공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준공보고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요구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보완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보완공사후 본 사업이 준공요건을 충족한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위 결과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기 승인한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6조 (관리운영권 등록)

- ①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거나 준공전 사용인가가 있는 후 즉시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 운영개시일 이전에 미리 협의하여 관리운영권의 설정, 운영개시일의 결정, 최초 운임의 결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법령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등록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한다.

제47조 (부대사업의 시행)

-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중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민간투자법 제21조의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부대사업은 기업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으로서 국가정책 등과 부합되어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부대사업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사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과 협의하여 당해 부대사업의 가능여부 등에 대한 해당관청의 의견서를 부대사업계획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 ④ 부대사업은 그 목적이 본 사업의 수익성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부대사업 시행으로 인해 본 사업의 수익성이 보전되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만(예: 본 사업만을 시행할 경우 요구되는 재정지원규모의 감액정도를 제시) 인정된다.
- ⑤ 부대사업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계획서 작성, 시행방법, 수익처리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제 6 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8조 (운영비용)

- ① 본 협약 체결 당시 운영비용은 2002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16,700억원(법인세제외금액)원으로서 민간투자법령 및 본 협약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며, 연도별 운영비용 내역은 부록7(운영비용)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② 부록7(운영비용)에 정한 매 사업연도의 운영비용은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경영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본 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 범위 내에서 상호 전용하거나 통합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영비용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분의 처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운영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 또는 운임인상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1.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정부 정책 철도공사(그 승계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연계노선 등 관련 노선의 운영기관, 기타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부록 7(운영비용)에서 정한 매사업연도별 운영비용이 증감되는 경우
 2. 정부 기타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비용의 증

- 감이 발생하여 주무관청이 해당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승인한 경우
3. 제16조(총사업비의 변경) 소정의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운영비용(보험료 등) 증감분이 발생하는 경우
 4. 세법 변경으로 인한 법인세(주민세 등 부가세 포함)의 변동으로 인하여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5.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경우
-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재무구조의 개선, 경영효율의 제고 등의 사유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운임의 인하, 무상사용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
- ⑤ 본 사업의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용이 사업시행자 지정시 결정된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49조 (유지관리 및 품질확보)

- ① 사업시행자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사업시설 및 부속 사업에 사용되는 시설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이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이 시설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이 최대한 되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6개월 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운영기간동안의 총괄적인 유지관리계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이러한 승인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에 관한 승인 또는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유지관리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이에 관한 승인 또는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3자에게 동 유지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10월말까지 본 사업시설에 대한 익년도 유지보수 계획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익년도 3월말까지 전년도 유지보수 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본 사업시설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의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⑦ 본 사업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유지보수가 유지관리계획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상당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수, 개량, 개축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⑧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기간 중 위험을 발생시킬 하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위험요인을 치유할 수 있는 보수 또는 개량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하고,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이행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주무관청과의 통보 또는 협의하는 동안 위험요소가 확대되거나, 긴급히 위험요인을 치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선 조치 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연락절차 및 유지관리계획과 운영계획의 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 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사업시행자간의 비상시의 연락절차(이하 본조에서 "연락절차"라 한다)를 수립하기 위하여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경찰, 소방 및 구급차 서비스를 포함함) 및 운영에 관련된 또는 그 영향을 받는 모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운영개시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연락절차를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연락절차와 관련하여 본 협약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비용 발생 시 협약당사자는 별도 협의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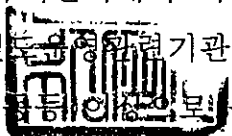
한다.

② 연락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해당 연락절차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관련 당사자들 간의 정기회의 소집
2. 본 사업시설의 교통관리를 위한 제반절차와 경찰, 소방 그리고 구급차 등 비상차량 진입경로를 포함한 비상사태 처리절차, 본 사업시설의 안전운영 관리 및 이용자, 사업시행자의 직원과 본 사업시설 부지 내에 있는 자의 안전관리
3. 관계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출입관련 약정
4. 관계기관과 연락을 취하기 위한 사업시행자의 대표 지정
5. 연락절차를 수시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

③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제1항에 따라 수립되어 합의된 본 사업시설 관리에 관한 연락절차
2.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내용 및 절차

④ 사업시행자는 유지관리계획 작성 시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철도안전관리기관의 유지보수 관련기준 및 일반적 산업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⑤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제1항에 따라 수립되어 합의된 본 사업시설 운영에 관한 연락절차
 2. 본 협약 및 수립된 연락절차에 따라 본 사업시설 운영에 대한 다음 사항의 세부절차
 - 가. 교통관리 및 교통제한
 - 나. 사고 시 본 사업시설의 구간별 폐쇄를 포함한 비상시의 처리절차
- 다. 해당 분야별 보건 및 안전 규정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안전운영과 이용자, 사업시행자의 직원 및 본 사업시설 부지 내에 있는 자의 안전
- 라. 운임의 부과, 징수, 계산 및 기록, 역무원 관리

제51조 (사업시행자의 기타 운영 관련 책임)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 개시 후 시설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이 최대한 도모될 수 있도록 본 사업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 관련 법령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운영 중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사용제한을 할 수 없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사용기간 종료시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 및 시설운영과 관련되는 각종 자료 등을 주무관청에게 무상으로 인계하기로 한다.

제52조 (관리 및 운영 등의 관련계약)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업무를 관리운영자에게 위임하는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계약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주무관청 또는 이용자들에게 현저한 추가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수임자 또는 계약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본 협약 상 부과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제53조 (운영실적 보고)

사업시행자는 익년도 3월말까지 당해 사업연도의 운영실적을 주무관청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철도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 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4조 (부속사업의 시행)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여 부속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본 협약에 의한 부속사업의 예상 수입은 부록6(부속사업수입)과 같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부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속사업의 내용 및 사업추진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운영개시일 전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부록6(부속사업수입)의 산정에 포함된 부속사업 외에, 사업시행자 지정 후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기타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수입 및 비용의 처리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④ 부속사업의 시행에 따른 실제 손익은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제55조 (보험가입)


-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중 발생가능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록9(보험)과 같이 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제출시 부록9(보험)에 따라 가입 예정인 보험계획 및 보험조건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보험계획에 따라 부보기간(보험기간) 개시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후 10일 이내에 보험가입 약약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1년에 1회 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규정된 보험을 본 협약에 따라 정해진 기간 및 조건 등에 따라 가입하지 아니하고 본 협약에 따른 보험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본 사업의 각종 사고관련 복구비용 등은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7 장 수익률 및 운임

제56조 (사업수익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실질사업수익률로서 세후 8.00%, 세전 9.08%(2002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로 하고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않는다.

제57조 (운임의 결정 및 조정)

- ① 본 사업의 기준운임은 부록5(운임수준 및 조정)에 따라 산정된다.
- ②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최초운임은 부록5(운임수준 및 조정)에 기재된 산식에 근거하여 기준운임에 2002년 5월 1일부터 운영개시일 직전일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누적적용(월 단위)하여 산출한 운임으로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최초운임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시설의 이용방법 및 운영개시일에 적용될 실제 최초운임
 2. 운임산출 기초자료
 3. 운임 징수방법 
 4. 운임의 감면 또는 할인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사업 현황
 6. 기타 운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운임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매년 1회에 한하여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기준으로 부록5(운임수준 및 조정)에 기재된 산식을 적용하여 운임을 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운임(최초운임을 포함함)은 본 사업시설의 총 연장 및 운임징수상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징수가 용이한 기준단위(50원)로 절상 또는 절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기준단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보다 높게 또는 낮게 결정되는 경우 그 증감분은 차기 운임조정시 반영한다.
- ⑥ 사업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기타 수도권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운임체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부록5(운임수준 및 조정)의 기

재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위 변경에 의하여 달성되는 효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제적 효과를 얻는 운임체계를 본 사업에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 ⑦ 사업시행자는 예정된 운임 조정액에 대해 운임 조정일 6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운임 조정일 30일전에 일반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운임의 조정에 대하여 조정예정일 60일 이전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실제 신고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조정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
- ⑧ 서울특별시 기타 수도권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운임 수준과 비교하여 본 사업의 운임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당사자 간의 사전 협의 후 본 사업의 운임을 인상할 수 있다.

제58조 (운임의 징수)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 기간동안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운임을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
-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운임을 부과하여 이를 징수하고, 본 사업시설에 대한 무임승차 또는 불법적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해당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해당 운임에 추가하여 국내 타 철도운영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부가금 비율에 준하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무임승차 및 운임의 할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9조 (운임정산)

수도권의 도시철도 구간 또는 철도구간과의 연락운송에 따라 발생하는 운임수입은 추후 연락운송에 대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제60조 (예상운영수입)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용한 본 사업의 예상운영수입은 2002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41,513억원(예상운임수입 40,202억원, 부속사업수입 1,311억원)이다.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

제61조 (주무관청의 재정지원)

-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건설보조금, 운임수입보조금, 환차손보조금 등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② 주무관청은 본 협약 또는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수입환수금과 환차익환수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기로 한다.

제62조 (건설보조금)



- ① 본 협약 체결 당시 주무관청이 총사업비 중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건설보조금은 2002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총사업비 대비 48%에 해당하는 금 5,611억원으로 하며,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은 부록3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와 같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의한 건설보조금을 승인된 실시계획 상의 공사공정율에 따라 지급하며, 실제 건설보조금을 지급할 시점에는 2002년 5월 1일부터 건설보조금의 지급대상인 분기의 직전분기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한다. 분기별 건설보조금은 공사수행 실적공정율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건설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실제공정율에 계획된 공정율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된 공정에 대한 건설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익년도 건설보조금 예상금액에 대한 자료

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해당분기 건설보조금 지급일 1개월 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본조 제2항에 따라 건설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음에도 동 분기에 대한 건설보조금이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기준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63조 (운임수입보조금 및 운임수입환수금)

- ①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운임수입보장 및 환수기간은 운영개시일(조기준공, 부분준공, 준공전 사용을 제외함)로부터 10년간으로 하기로 한다. 단,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영 중단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위 수입보장 및 환수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실제운임수입이 부록4(예상운영수입)의 해당연도의 예상운임수입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운임수입보장을 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기간동안 적용될 운임수입보조금 및 운임수입환수금의 금액은 매 운영연도의 실제운임수입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보장기준운임수입에 미달하거나 환수기준운임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족분 또는 초과분(초과분이 발생함에 있어서 징감액처리와 관련된 추가 운영비용,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으로 한다. 단, 부속사업수입 등에 대한 보장은 제외한다.

1. "보장기준운임수입"이라 함은 본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장하는 운임수입 기준으로서 부록4(예상운영수입) 제1조에 명시된 매 운영연도 예상운임수입 중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일까지의 예상운임수입의 80%, 운영개시일 이후 만 6년이 시작되는 초일부터 만 10년이 되는 말일까지의 예상운임수입의 70% (2002년 5월 1일로부터 직전 연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운임수입)를 말한다.

2. "환수기준운임수입"이라 함은 본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운임수입의 기준으로서 부록4(예상운영수입) 제1조에 명시된 매 운영연도 예상운임수입 중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일까지의 예상운임수입의 120%, 운영개시일 이후 만 6년이 시작되는 초일부터 만

10년이 되는 말일까지의 예상운임수입의 130%를 말한다.

- ③ 운영개시연도의 운임수입보조금 및 운임수입환수금의 금액은 부록4(예상운영수입)를 기준으로 운영개시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일수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④ 본조에 의한 운임수입보조금 또는 운임수입환수금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매년 3월말까지 직전 연도의 실제 운임수입과 운임수입보조금 및 운임수입환수금을 확인하는 운임수입연간보고서 (이하 본조에서 "운임수입연간보고서"라 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약당사자들은 운임수입연간보고서의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금액을 확정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운임수입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운임수입보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호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기간 연장 또는 운임 인상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운임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 1. 운임수입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제4항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되는 운임수입보조금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주무관청의 예산계획상 불가피한 경우 다음해 2월말까지 지급한다. 동 지급기일 후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실제지급일 직전 1개월간의 기준이자율을 적용한다.
 - 2.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무상사용기간 연장방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3. 운임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기타 수도권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운임 수준과 비교하여 본 사업의 운임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은 그 운임인상 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운임수입환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운임수입환수금을 12월말까지 주무관청에게 지급한다. 동 지급기일 후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일 직전 1개월간의 기준이자

율을 적용한다.

- ⑦ 주무관청은 환수해야 할 초과 운임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환수분을 당시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보조금에의 충당, 운임의 인하 및 무상사용기간 단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64조 (환차손보조금 및 환차익환수금)

- ① 사업시행자가 건설자금용도로 차입한 외화에 대하여 초과 환차손(익)을 보게 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초과 환차손(익)의 50%를 환차손보조금 또는 환차익환수금으로 보전 또는 환수하도록 한다.
- ②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기간 동안 어느 특정 사업년도 중 사업시행자가 초과 환차손을 입는 경우, 초과 환차손 중 제1항에 의하여 보전되는 환차손에 대하여는 제63조(운임수입보조금 및 운임수입환수금)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기간 동안 어느 특정 사업년도 중 사업시행자가 초과 환차익을 얻는 경우, 초과 환차익 중 제1항에 의하여 환수하는 환차익에 대하여는 제63조(운임수입보조금 및 운임수입환수금)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초과환차손(익)은 매 사업년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그 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직전 년도의 초과환차손(익)에 관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며, 이때 초과환차손보전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자료(내역 포함)를 첨부하여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 ⑥ 사업시행자가 건설자금용 외화차입금 중 재금융차입금으로 대체한 외화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초과 환차손익에 대하여도 본 조를 적용한다.

제65조 (행정적 지원)

- ① 주무관청은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개정된 관계법령이나 새로 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과 동등한 재정적 조건(본 협약에서 보장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성과 본 협약에 따른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원칙)을 유지하도록 협력한다.

-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수요를 창출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결버스 또는 마을버스 운영사업자 등과 제휴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과의 연계노선인 각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와의 환승 및 정산에 관련한 사항을 관련 기관과 협의 시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및 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제반 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⑤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전력, 용수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 ⑥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1.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본 사업과 관련된 부지의 용도의 결정 및 통지
 3. 차량기지 사용 또는 차량의 위수탁검수 등과 관련한 관계기관들과의 협의. (철도공사(그 승계기관을 포함)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차량기지 관련 비용 또는 차량의 위수탁검수 비용을 본 협약에 의한 해당 금액 이상으로 인상하여 요구하는 경우의 행정적 처리가 포함됨)
 4. 기타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
- ⑦ 주무관청은 본 사업의 통신설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정적 지원을 한다.
 1. 사업시행자는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파법상 본 사업시설의 전기통신설비를 신고하고 무선서비스에 대한 승인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무선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은 관계기관과 협의 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2.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무선설비의 확정과 관련하여 소방용 무선설비의 구성에 대한 소방방재청과의 협의, 지하 역사내 경찰을 위한 무선통신망 구성에 대한 경찰청과의 협의 등을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통신시설에 대한 장애 조사, 손해 관련 대응책 수립 및 전력유도의 방지대책 수립을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관계기관과 협의 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4.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연락운송에 따른 역무자동화설비와 분당선 이용을 위한 설비를 시설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관계기관과 협의 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제66조 (자금차입 등과 관련한 정부의 협조 등)

-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대주단간의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금융계약(채차입계약을 포함함) 체결, 대주단의 대출실행 및 대출금관리,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 등과 관련하여 제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 ② 주무관청은 대주단의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 등을 설정할 경우 이에 협조한다.
-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해외기자재 및 장비의 수입 등과 관련한 현금차관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도입조건(원금,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의미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당시설 및 현금차관의 도입에 필요한 수입허가절차, 인허가절차 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또는 대리은행이 본 협약 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협의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대주단과의 금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금융계약 상의 채무 불이행사유 발생 등으로 대주단이 담보권 등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체결 이후 자금제조달을 추진하는 경우 자금제조달시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제67조 (민원처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3자의 민원 또는 청구를 접수한 경우 성실한 자세로 이 청구 또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민원해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 ② 본 협약상 민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어느 제3자가 본 사업에 기한 자신의 권리 또는 이해관계의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민원으로서, 사업부지 및 지장물상의 권리에 관련한 민원, 직접적인 영업손실 보상을 이유로 하는 민원 (강남역 및 양재역의 지하상가 이주 및 관련되어 발생하는 제반 영업손실에 관한 민원을 포함)
 - 2. 본 사업시설의 시공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작업장 부지 위치 및 가설사무실,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등과 관련한 민원, 사업시행자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및 실시계획에 미반영한 사항 등으로 인한 민원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제2호에 관한 모든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④ 주무관청은 제2항 제1호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사업시행자가 그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동 민원처리에 적극 협조한다.
- ⑤ 단일 민원으로서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민원이 복합되어 있는 민원의 경우에는 각 사항별로 해당되는 민원요소들을 판단하여 위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8조 (공동사용합의서)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공동사용합의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제3자

와 협의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기로 한다. 공동사용합의서의 잠정 목록은 부록16(공동사용합의서)에 열거되어 있다.

제69조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의한 노선 등과의 연계)

- ① 본 사업시설과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의한 노선의 운행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 사업시행자 및 해당 연장노선의 사업시행자(주무관청을 포함함)와 별도 협의한다.
- ② 주무관청은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본 사업 또는 본 사업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 9 장 위험배분 및 의무불이행

제70조 (위험배분원칙)

- ①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험(사업시행자 귀책에 의한 위험, 정부의 귀책에 의한 위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으로 구분함) 중 귀책사유가 협약당사자에게 있는 사항은,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험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 ② 협약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위험은,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1차적으로 관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75조(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 ③ 해당 위험의 유형과 성격규명 및 각 협약당사자의 위험분담비율에 관하여 협약당사자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회계법인, 기타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위험발생사유가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지배범위 내에 근접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위 사항들을 정하도록 하고, 협약당사자는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71조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

- ① 제78조(해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인정된다.
1. 실시계획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본 사업시설에 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합병을 위한 경우 제외)
 5.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금융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에 따른 정부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이나 수입손실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의 변경이나 보조금지급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72조 (정부의 의무불이행 사유)

- ① 제78조(해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상 정부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인정된다.
1.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항 제1호, 제2호를 포함하여 본 사업시설, 본 사업시행권에 대한 몰수
 2. 주무관청의 부지제공, 보상업무, 지장물처리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어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주무관청의 요구나 방침 등(운임의 감면요구 포함)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조정, 결정된 운임 보다 낮은 수준의 운임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
 4.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에 정한 주무관청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건설기간 중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사유를 치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며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고, 무상사용기간 중인 경우 발생 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제 10 장 불가항력

제73조 (불가항력 사유)

- ① "불가항력 사유"라  자들로 하여금 본 협약 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협약당사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 또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 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을 말하며,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예측 불가능한 위험물, 문화재의 발견
 2.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3. 전국적 파업 또는 사회 산업 전반의 파업 또는 수도권에 소재한 지하철 또는 철도 산업의 연대 파업
 4.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민간투자정책 혹은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

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금융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5. 기타 위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일시 해석되는 불가항력 사유

③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해석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폭동, 테러, 사변 또는 내전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제74조 (불가항력의 발생통지 및 이의제기)

① 제73조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영향을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의 영향을 받은 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불가항력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하여야 한다. 서면통지에는 불가항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책임에 대한 예비적 평가내용, 의무불이행 유정기간, 가능한 치유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약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통보 또는 통지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에는 통보 또는 통지 가능시점에 그 지연사유를 포함하여 불가항력 사유 발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협약당사자가 통지된 불가항력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 발생에 대한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이의제기 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불가항력 분쟁을 통지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협약당사자가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한 이의를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의 불가항력사유 발생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단, 이의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 협약당사자들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불가항력 사유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다.

⑤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합법성이 인정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간

주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에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영향과 이로 인해 협약당사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진행 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사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단, 협약당사자들은 위 협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다.

- ⑥ 협약당사자가 불가항력의 영향을 받은 경우 불가항력 사유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계속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

- ① 불가항력 사유로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의 증가, 기타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부록10(보험)에 기재된 보험으로 해소되며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 ② 사업기간 중에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 1.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당해 불가항력사유에 치유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공사기간 또는 운영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제63조(운임 수입보조금 및 운임수입환수금)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운임수입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운영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 2. 총사업비 또는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가. 비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경우 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80%를, 사업시행자는 20%를 부담한다.
 - 나.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경우 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90%를, 사업시행자는 10%를 부담한다.
 - 3.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여 운영수입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본 항 제2호에 준하여 이를 처리한다.
- ③ 주무관청은 불가항력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 공사비 및 대출금 등 사업시행

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등에 대하여 그 원리금의 지급기일이 도달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에 필요한 대출금이나 기타 단기금융을 얻는 데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 11 장 협약의 종료 및 해지

제76조 (상호 합의에 의한 협약종료)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기간 중 언제든지 상호 합의 하에 본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을 종료시킬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종료할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합의를 통해 본 협약으로 정한 협약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권리 및 권한, 사업시행자의 자산 및 부채 등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로 한다.

제77조 (사업기간 만료에 의한 협약종료)

- ① 본 협약은 중도 해지되지 않는 한 제9조(무상사용기간)에서 정한 무상사용기간 만료(제8조(사업기간)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을 포함함)에 의하여 종료되고, 협약종료와 함께 제4조(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와 제5조(사업시행자의 의무)에 따라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등 권리와 의무는 소멸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년, 1년, 6개월 전에 각 1회씩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주무관청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시설점검 결과, 주무관청에 인계시까지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보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종료 시 본

사업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본 사업시설 및 운영의 원만한 인계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협약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협약당사자들은 주무관청의 본 사업시설 인수 시 필요한 신차량의 발주 기타 차량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본 협약 종료로부터 적절한 기간 전에 미리 협의하기로 한다.
2.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협약종료일 3개월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수리,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시간적, 통상적 마모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별도의 장비 등을 보유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가액을 무상사용기간 동안 상각하고, 무상사용기간 종료시 무상으로 주무관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4.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또는 모든 전기설비,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운영 및 관리, 또는 해지직전 운영의 부과 및 징수 등과 관련하여 체결 또는 사용 중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와 자산을 (이래 계약의 이외를 제외하고) 해지시 지급금 이외의 별도의 대가지급 없이 취득 및 인수한다. 이러한 인계인수시 사업시행자는 그 대상 자산(차량 기타 대상 설비 포함)을 인계 당시의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는 상태로 인계 또는 양도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그 마모정도, 상각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신규 자산으로 대체 구매하여 양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5. 제91조(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 제4항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지적재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은 해지 후에도 제91조(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에 규정한 바에 따라 복사, 재생, 수정, 번역, 사용권은 비독점적으로 취득한다.
6.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되고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과 함께 유지보수계획 및 운영계획을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7.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수급인 또는 기계 및 전기설비에 대해 수급인이나 제조업체가 보장하는 모든 혜택이 주무관청에 양도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본 협약의 종료는 종료일 현재 본 협약에 따라 이미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8조 (해지)

①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인한 해지

제71조(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71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는 그로 인하여 본 사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정부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인한 해지

다음 각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운임이나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주무관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본건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제72조(정부의 의무불이행 사유)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3. 제72조(정부의 의무불이행 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해지

협약당사자는 제73조(불가항력 사유)에서 정의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불가항력 사유를 치유 또는 개선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 협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본 작업의 공사가 불가항력 사유의 결과로 인해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정지된 경우
2.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총사업비가 50% 넘게 증가된 경우
3.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정지된 경우
4.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본 사업시설의 보수 및 재시공 비용이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④ 금융완결 불비 등으로 인한 해지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이 기간은 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여 연장됨)에 금융완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금융계약이 동 계약상의 기한이전에 종료(또는 해지)되고 6개월 이내에 대체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단 동 사유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는 주무관청이 각 중도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 없이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매수청구로 인한 해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여타 권리에 부가하여,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하여 본 사업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매수청구인정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주무관청의 매수청구인정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매수청구인정일")에 본 협약은 해지된다.

- ⑥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 및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유는 본 협약의 해지 사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79조 (중도해지시의 조치 등)

- ① 무상사용기간 또는 운영기간 만료 이전에 사업시행자 또는 주무관청의 귀책

사유, 불가항력의 사유로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 본 사업 시설(공사기간 중에는 기성부분을 말하며,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일체의 장비 등의 추가물도 포함함)의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은 즉시 주무관청에게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을 인계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해지시 귀책사유에 따라 본 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해지시 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협약당사자는 매수청구권 실행 또는 협약 중도해지에 앞서 위험의 치유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 사업의 계속 수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 ④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 시 본 사업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본 사업시설 및 운영의 원만한 인계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주무관청에 인계시까지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리,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정상적인 기능유지와 관련없는 시간적 통상적 마모는 예외로 한다.
- ⑥ 제2항 및 제5항의 점검 및 보수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82조(해지시 지급금 지급 및 조정)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금융계약 등 모든 계약을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 또는 본 사업의 대체사업자, 승계인이 승계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 한함) 사업시행자는 승계에 필요한 모든 협조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⑦ 운영기간 중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무관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대체사업자 또는 승계인이 본 사업시설 및 운영을 인계할 때까지 주무관청의 관리 하에 본 사업시설을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은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⑧ 제77조(사업기간 만료에 의한 협약종료) 제3항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3항은 본 협약의 중도해지에 의한 종료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⑨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해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및 본 사업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무관청에 안전 조치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0조 (중도해지에 대한 이의제기)

- ① 상대방으로부터 협약의 해지를 서면통지 받은 협약당사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그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제84조(분쟁의 해결) 제2항의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1조 (해지시 지급금)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부록 11(해지)에 따라 산정한 해지시 지급금(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를 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2조 (해지시 지급금의 지급 및 조정)

- ① 주무관청은 제81조(해지시 지급금)에서 산정된 해지시 지급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금융계약(들)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해지일 현재 미상환원리금이 있을 경우 정부는 이를 해지시 지급금으로 금융계약(들)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② 본 협약의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 지급금액에 대하여 협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그로부터 15일(즉, 본 협약의 해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회계법인 또는 신용평가기관 등 전문기관(이하 본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합의 선정하여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을 의뢰한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각자가 보유하는 관련자료 및 정보 등을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을 의뢰 받은 날로부터 가능한 한 30일 이내에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협약당사자 쌍방에게 서면 통보하고, 통보된 금액은 해지시 지급금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에 지급할 관련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1. 정부의 의무불이행 사유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주무관청이 부담한다.
2.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3.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똑같이 부담한다.
4. 금융미완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상기 제1호 또는 제2호 또는 제3호를 준용하기로 한다.

④ 협약당사자들은 해지시 지급금의 금액을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지시 지급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해지시 지급금의 금액을 통보 받은 후 120일 되는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이자(차입금의 직전 1개월간의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급해야 할 해지시 지급금에 관하여, 주무관청은 관계법령 및 본 협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또는 조건을 부가함이 없이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⑥ 본 협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 지급금에서 동 보험금 상당액을 공제한다. 단, 보험금이 손상된 시설의 복구나 보상금 지급으로 사용된 것으로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⑦ 본 협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주무관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제3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주무관청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주단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3조 (매수청구권)

-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대하여 본 사업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본 사업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 이상 초과한 경우
 3. 본 협약에서 정한 주무관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4. 기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며 주무관청이 매수청구권의 인정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당일에 본 협약은 해지된다.
- ③ 매수금액은 매수사유에 따라 제81조(해지시 지급금)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 ④ 협약당사자는 주무관청이 매수청구를 인정한 날(이하 본조에서 "매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매수가액의 금액 (이하 본조에서 "매수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매수일 후 120일 되는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이자(지급기일 직전 1개월간의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⑤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급해야 할 매수금액에 관하여, 주무관청은 관계법령 및 본 협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제한 또는 조건을 부

가함이 없이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 12 장 분쟁의 해결

제84조 (분쟁의 해결)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이하 "분쟁"이라고 한다)을 신의 성실에 입각한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여 협약당사자가 중재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86조(중재)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85조 (금액에 대한 분쟁)

- ①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 당사자에 대한 지급이 청구된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있는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액을 지급하고, 분쟁의 해결 시까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② 분쟁의 해결 시까지 보류된 모든 금액 중 이의가 있는 부분은 당해 분쟁이 수취인에게 유리하게 해결된 경우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금에는 그러한 금액에 대한 이의가 없었더라면 지급되었을 날짜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로 계산되는 이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6조 (중재)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제84조(분쟁의 해결)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별도의 합의에 의해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협약당사자들이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에 합의하는 경우 아래 각호에 따른다.

1. 당사자들은 그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며, 중재를 개시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통지(이하 본 조에서 "중재개시통지"라 한다)에 의하여 개시된다.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 중재지는 대한상사중재원 소재지로 한다.
2.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하며, 그중 1인은 주무관청이, 또다른 1인은 사업시행자가 선임하고, 제3중재인은 위 2인의 중재인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개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기로 한다. 그 기간 내에 제3중재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제3중재인이 중재판정부의 위원장이 된다.
3. 중재는 한국어로 진행된다. 중재판정부는 본 협약의 규정 및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
4. 중재비용은 중재판정으로 결정한다.
5.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이 내려지기까지는 각자의 의무이행을 중단하지 않기로 한다. 중재판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재판정은 최종 중재인의 선임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그 판정시한은 쌍방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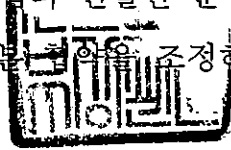
제 13 장 기타사항

제87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고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며 본 협약에 작성된 부록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88조 (협약의 변경)

-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의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의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본 협약에 보장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확보여부 및 본 협약에 규정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 ④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정 또는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어 그 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89조 (권리의무의 양도)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본 협약 상 권리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그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본 협약, 설계계약 및 공사도급계약 상의 권리 및 의무, 보유동산이나 수입, 은행 구좌, 지적 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 설정할 수 있다. 단, 주무관청에 대한 권리나 의무 또는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54조(부속사업의 시행)의 부속사업(제54조(부속사업의 시행) 제3항에 의한 기타 경미한 사업을 포함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의무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90조 (대체사업자의 선정)

- ① 주무관청은 제78조(해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사유를 치유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기간 내에 해당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시정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대주단의 어느 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대주단 또는 대리은행은 그 해당 사유발생일 이후 9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자를 추천할 수 있다.
- ② 주무관청은 대체사업자의 추천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 및 대주단에게 대체사업자 지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추천된 자가 본 협약 상 예정된 본 사업의 설계, 공사, 운영, 기타 이 경우 주무관청은 추천된 자가 본 협약 상 예정된 본 사업의 설계, 공사, 운영, 기타 유지보수를 지속할 수 있는 자격과 자본조달 및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 대체여부를 결정한다.
- ③ 주무관청과 수용된 대체사업자 및 대주단은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 및 금융계약상의 의무불이행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주무관청과 대주단 및 수용된 대체사업자가, 주무관청의 대체사업자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항에 언급된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사유 및 금융계약상의 의무불이행사유의 시정을 위한 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대주단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한 대체사업자추천통지를 취소하는 서면통지("취소통지")를 보낼 수 있고, 주무관청 또한 대체사업자의 수용을 취소("수용취소")할 수 있다. 취소통지

나 수용취소가 있는 경우, 또는 대체사업자가 위 제2항에 따라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당사자들의 권리는 추천 통지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대체사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주단의 권리 행사로 인해 대체사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주단의 권리를 촉발시킨 관련 사유나 그와 같은 사유를 치유하거나 시정하는 것에 대하여 대체사업자와 대주단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④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대체사업자와 주무관청은 본 협약에 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대체사업자는 본 협약상의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인수한다. 그 계약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상의 모든 사업시행자에 대한 언급은 대체사업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91조 (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

-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내 지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본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 및 본 사업시설 운영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지정한 자에게 "특정목적"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지적재산을 (법률상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복사, 재생, 수정, 번역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한다. 단, 동 권리는 비독점적이며 양도할 수 없다.
- ③ 지적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러한 지적재산을 복사, 재생, 수정, 번역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3자로부터 허락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④ "특정 목적"이라 함은, 주무관청 내지 그 기관 또는 주무관청을 대리하는 기타 여하한 자가 사업기간 만료 또는 협약의 해지 중 선행하는 시기 이후 본 사업시설 시스템의 설계, 건설,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자가 사용하는 경우 이는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전제로 한다.

- ⑤ 주무관청은 지적재산에 관하여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 전부나 일부를 본 협약상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2조 (재무보고서)

-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법령 및 대한민국의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매년 감사하게 하고,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93조 (정부의 협약준수 의무)

정부는 본 협약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확인함과** 아울러 본 협약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제94조 (비밀유지)

-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그리고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후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의 공개
 - 3. 법령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 4.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

개

- ③ 제2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 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라야 한다.

제95조 (통지)

- ① 본 협약 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정부에 대한 통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수신 : 건설교통부장관

전화 : (02) 504-9055

팩스 : (02) 504-9056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수신 : 신분당선주식회사 대표이사

전화 : (02) 510-3776

팩스 : (02) 510-3322



- ②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는 통지의 접수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③ 본 협약 상의 통지는 우편인 경우 직접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송 확인이 발송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통지가 송달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96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또는 본 협약 상 허용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또는 본 협약 상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7조 (완전합의)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서류들은 협약 당사자들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고 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협약당사자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제98조 (일부무효)

특정 관할 법률 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 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 법률에서의 또는 본 협약상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9조 (준거법)

- ① 본 협약 및 그에 따라 체결되거나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 및 서류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② 본 협약에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투자법, 철도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제100조 (문서의 우선순위 등)

- ① 본 협약 및 그 관련 문서들의 해석 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실시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은 당사자간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며 종전의 모든 합의, 양해 및 협상에 우선한다.

제101조 (언어)

- ① 본 협약은 한글본으로 작성되며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 ② 외자조달 필요성에 의해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한국어와 영문본을 병행 작성하여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경우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102조 (해석)

- ① 본 협약 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 상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포함한다.
- ② 단수형태의 언급은 복수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③ 본 협약 상의 표제 또는 제목은 참고 및 편의를 위해 기록된 것으로서 본문을 해석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어떤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 ⑤ 협약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대체사업자, 양수인을 포함한다.

제103조 (경과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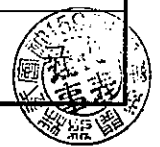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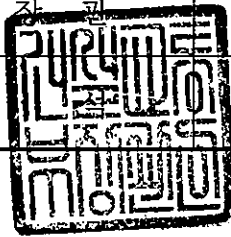
관계법령 및 정부의 행정입법 등 제반행정조치가 본 사업 완료 이전에 사업시행자를 위하여 개정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

여 이들 법령 및 행정조치가 본 사업에 반영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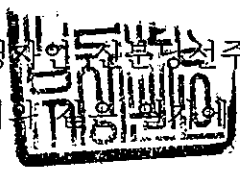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5. 3. 18.

대한민국	신분당선주식회사
건설교통부장관	대표회사 두산산업개발주식회사
장관 강동	대표이사 김홍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분당선주식회사의 출자[예정]자들은 이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약금의 원천에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한다.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대표이사	김 홍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2	대표이사	이 용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대표이사	박 세	
동부건설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대표이사	백 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대표이사	민 경	
주식회사 태영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2-75	대표이사	종 영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568-1	대표이사	한 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3	이사장	김 평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대표이사	박 성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대표이사	신 은	